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
- 나.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

- 다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
- 라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
- 마.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
- 바.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*

가.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(2014/8/4 개정 · 8/7 시행)

1) 개정 목적

- ☐ 개정된 「개인정보보호법」의 시행(‘14.8.7)으로 협회규정 및 모범규준에 따른 업무 또는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경우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

2) 개정 내용

- ☐ 펀드 판매회사 변경 관련 별지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생년월일로 변경
 - 별지 제47호
 - 펀드 판매회사 변경 계좌정보확인서
 - 별지 제48호
 - 펀드 판매회사 변경 (신청/취소신청) 통보서
 - 별지 제49호
 - 펀드 판매회사 변경 (접수/거부) 통보서
- ☐ ‘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’ 관련 별지 서식 중 ‘투자운용인력 변경 양식’에서 주민등록번호항목 삭제
 - (별지 제8호) 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
 - (제1호 서식) 투자운용인력 변경

*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

☐ '집합투자기구 기준가격 정보' 관련 별지 서식 중 '펀드별투자운용인력정보 양식' 폐지

— (별지 제12호)집합투자기구 기준가격 정보

• (제3호 서식) 펀드별투자운용인력정보

나.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일부개정(2014/8/4 개정 · 시행)

1) 개정 목적

☐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양식 변경 및 착오주문방지관련 조문 명확화

2) 개정 내용

☐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양식 개정(3~7~8조, 별표6, 별표7, 별표8)

— (기존) 여행자증명서 등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개설시 국내 신원확인인 주민등록번호 기재(금융거래 사전 신청서)

— (개선) 금융감독원이 기 배포한 '금융거래 목적 확인서(국내 신원확인인 정보 삭제)'로 해당 양식 개정

☐ 착오주문방지관련 조문 명확화(2~6조)

— (주식 적용기준) 조문과 별표상 단어 상이 및 경고 · 보류 적용기준 불일치 개선

다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2014/8/6 개정 · 8/7 시행)

1) 개정 목적

☐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개정 및 시행('14.8.7)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제한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한 일부 별지 서식의 개정 필요

2) 개정 내용

- ☐ '비위행위 확인의뢰서' 및 '징계내역 통보서'의 기재사항 중 '주민등록번호'를 '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'로 대체(별지 제16호, 제19호)

라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2014/8/23 개정 · 8/25 시행)

1) 개정 목적

- ☐ 집합투자증권 판매창구 별도 설치 및 불편신고센터 설치의무에 대한 규제 실익이 없어 이를 개선하고, 영업활동이 없는 paper company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기업공개시 대표주관회사의 조사분석자료 공표의무를 면제해 공시의무를 완화

2) 개정 내용

- ☐ 집합투자증권 판매창구 별도 설치의무 면제사유 신설(2-8조의2)
 - (기존)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증권 투자권유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창구에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함
 - 실제 창구직원은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므로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만 별도로 표시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지나친 규제
 - (개정) 창구직원의 펀드투자상담사 협회 등록 사실을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경우, 별도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창구 설치의무 면제
- ☐ 집합투자증권 판매 관련 불편신고센터 설치의무 폐지(2-9조)
 - (기존)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집합투자증권 판매관련 불편신고센터(민원센터)를 마련하고, 이와 관련하여 투자자에 대한 고지 및 협회에 보고의무 부담
 - 판매회사는 대부분 전자민원접수창구(금투업규정상¹⁾ 의무설치)를 통해 모든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

1) 금융투자업규정 2-31조

-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만 별도의 불편신고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 부담과 투자자의 혼선 야기

— (개정) 집합투자증권 판매 관련 불편신고센터 설치의무 폐지

□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기업공개시, 대표주관회사의 조사분석자료 공표의무 면제(2-30조)

- (기존) 금융투자회사는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법인의 주식에 관한 조사분석자료를 상장일부터 1년간 2회 이상 공표하여야 함
 - 유사규제인 한국거래소의 기업분석보고서 제출·공시의무의 경우에도 SPAC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(코스닥시장상장규정 26조 5항, 동 규정 시행세칙 23조)
- (개정) SPAC의 기업공개 시, IPO 대표주관회사의 조사분석자료 공표의무 면제

□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재무현황 공시의무 완화(3-33조)

- (기존)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(FX마진거래)를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재무현황을 매분기 종료후 45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함
 -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 : FX마진거래를 위해 금융투자회사 명의로 위탁자 계산으로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에 개설하는 계좌
-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재무현황은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(CFTC)의 공시를 활용하고 있는 바, CFTC 공시기한과 연계할 필요
 - CFTC는 해당 회사가 매월말 이후 17영업일 이내에 재무제표를 보고하도록 하고, 보고기한 만료 후 12영업일 이내에 공시하되 필요시 자체적으로 지연공시 가능
 - 사례 : '13년말 재무현황을 한국시간 기준 '14.2.13(목)이 아닌 '14.2.15(토)에 공시)
- (개정) CFTC가 해당 회사의 재무현황을 공시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,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, 지체없이 공시하도록 예외 인정

□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교육 의무이수 폐지(4-66조)

- (기존)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는 쉬운 금융보고서를 제공하고자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·검토하는 자를 협회가 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로 제한



- 자산운용보고서는 양식이 표준화되어 있으며, 3년간의 교육으로 업계 담당자의 보고서 작성수준은 이미 일정 수준으로 향상
 -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제공 요령 :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1 제20호에 따라 협회가 자산운용보고서 표준서식에 관한 사항과 제공방법 등을 정함
- (개정)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교육 의무이수 폐지
 - 단, 교육을 원하는 직원은 자율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(금융투자교육원, 금융보고서 작성실무 과정)은 존치

마.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일부개정(2014/8/25 개정 · 9/1 시행)

1) 개정 목적

- ☐ 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제도 도입 관련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표준약관에 반영

2) 개정 내용

- ☐ 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제도 조항 신설(24조 1~3항)
 - 거래소는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²⁾에 따라 대량투자자착오거래를 구제하는 경우 약정가격을 구제가격으로 정정 가능
 - 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시 회사는 구제가격을 적용하여 결제대금 및 위탁증거금을 산출
 - 회사는 거래소로부터 통지받은 착오거래 구제신청 등의 사실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안내
- ☐ 거래소의 거래기록 멸실 및 복구곤란 시 거래취소 조항 추가(25조 2항)
 - 거래소는 천재지변, 전시·사변 등으로 거래소 파생상품시스템의 거래기록 멸실 및 거래기록 복구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거래취소 가능
 - KRX는 위 내용을 약관 기재사항으로 하는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」개정을 예정함에 따라 이를 표준약관에 반영

2) KRX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81조의2, 시행세칙 78조의2~4



바.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일부개정(2014/8/28 개정 · 9/1 시행)

1) 개정목적

- ☐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개정('14.8.20)됨에 따라 금융투자협회의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에 그 내용을 반영

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 주요 개정내용

- ① 호가의 실시간 가격제한 제도 도입
 - 실시간상한가 초과 매수호가 및 실시간하한가 미달 매수호가 접수차단 등 ⇒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개정 필요
- ② 착오거래제도 구제제도 개선(거래소에서 별도 설명서 마련)
 - 결제곤란 우려 있는 일정 대량착오거래시 거래소의 직권 구제 등
- ③ 결제완결시점 명시화
 - 차감결제현금 등의 거래소 납부시점의 결제완결시점으로 명확화 등

2) 개정내용

- ☐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위험고지 예시사항 구체화 및 명확화(위험고지서 II. 5.)

- 가격제한폭 등 거래 관련사항은 거래소의 정함에 따르도록 그 책임을 명확화하고 가격변동폭 및 옵션거래 개념 추가

구 분	기 존	개 정
거래대상	일부 선물거래	일부 장내파생상품거래
거래제한사유	가격제한폭 이동, 상대호가 및 주문수량의 부재	가격제한폭 또는 가격변동폭 이동, 상대호가 및 주문수량의 부재

연구원 이현정 (02-3771-0685, anet2@kcmi.re.kr)